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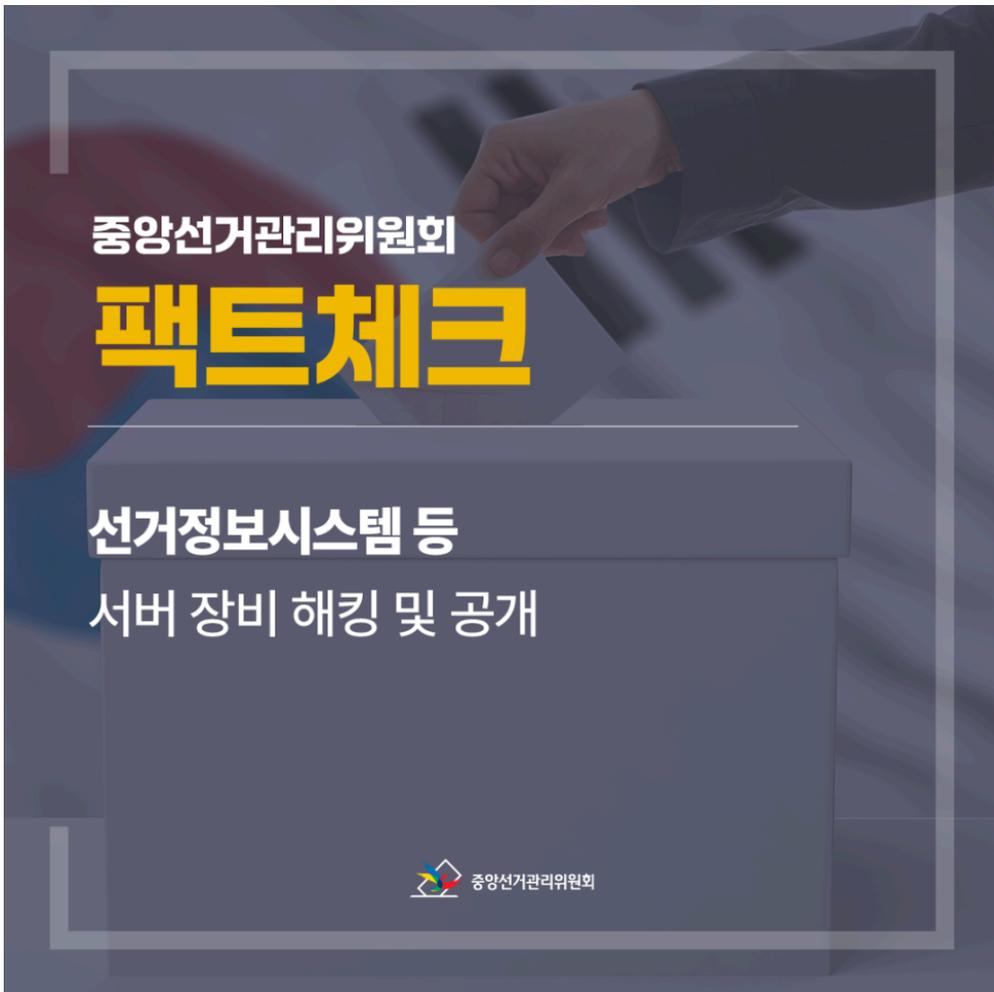
자료공간

자료공간 | 정책/홍보 | SNS 콘텐츠

SNS 콘텐츠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 장비 해킹 및 공개에 대한 팩트체크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5-01-20



Q1.

팩트체크

계엄군이 촬영해 간 중앙선거위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장비, 촬영만으로 서버 내 정보를 해킹할 수 있다?

A.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 전산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 서버 장비에 접속한 사실 없음
- 또한, 중앙선거위 서버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 안에서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전국 구·시·군선거위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개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정보시스템을 조작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음



Q2.

팩트체크

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 논란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위 서버를 공개해야한다?

A.

- 선거위 서버 내용은 「정보통신기반법」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지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검증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단,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는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서버 정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면적인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재구축을 하더라도 시스템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 장비 해킹 및 공개

Q1. 계엄군이 촬영해 간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장비, 촬영만으로 서버 내 정보를 해킹할 수 있다?

A.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전산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 서버 장비에 접속한 사실이 없음

또한, 중앙선관위 서버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 안에서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전국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개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정보시스템을 조작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음

Q2. 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 논란 해소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한다?

A. 선관위 서버 내용은 「정보통신기반법」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지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검증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단,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는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서버 정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면적인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재구축을 하더라도 시스템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

A1.png

첨부파일



A2.png



A3.png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

4. 2. 재·보궐선거 예...

이전글

담당부서: 홍보과 / 02-3294-1032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정치관계법 질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자유 의견](#) [홈페이지 개선의견](#)

콘텐츠 만족도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평가하기



홍보과(02-3294-1035)에서 제작한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 장비 해킹 및 공개에 대한 팩트체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연락처](#) [찾아오시는길](#)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바로가기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